1. 개정이유

새정부 출범 후 조속한 용산공원 조성 필요성에 따라,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존 2개과(기획총괄과, 공원정책과) 업무를 3개과(공원정책과, 공원운영과, 기획지원과)로 각각 사무 분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조직구성 및 사무분장 등 조정

- 기존 2개 과(기획총괄과, 공원정책과)에서 공원정책과, 공원운영과, 기획지원과 3개 과로 개편(제3조 제4항), 부서 간 사무분장(제4조) 및 정원(별표)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훈령 제2023-1592호

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

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기획총괄과 및 공원정책과”를 “공원정책과, 공원운영과 및 기획지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기획총괄과장 및 공원정책과장”을 “공원정책과장, 공원운영과장 및 기획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총괄과장”을 “공원정책과장”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.

1. 용산공원 조성관련 업무의 총괄
2. 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・조성・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부분반환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4. 용산공원 법령・제도에 관한 사항
5. 국회 및 예결산 등 업무에 관한 사항
6.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검토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
7.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등에 관한 사항
8. 추진단 인사・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
9. 산재부지(유엔사, 캠프킴, 수송부)에 관한 사항
10. 기타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원정책과장”을 “공원운영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임시개방부지 운영 및 행사 관리에 관한 사항
2. 용산기지 반환 관련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
3. 임시개방부지 관리(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관리)에 관한 사항 업무
4. 용산기지 반환 관련 펜스 공사에 관한 사항
5. 위해성 저감조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6. 오염정화 관련 기초 조사 등 정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7. 임시개방 관련 타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

④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전문가・시민・사회단체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
3. 용산공원 추진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
4.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에 관한 사항
5. 추진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
6. 미국대사관 숙소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
7. 舊방위사업청, 군인아파트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〕 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(제3조제7항 관련)

구 분	고위 공무원단	4급	5급	6급 이하	계
단 장	1				1
공원정책과		1	4	3	8
공원운영과		1	4	2	7
기획지원과		1	3	2	6
합 계	1	3	11	7	22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(생략)	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기획단에는 기획총괄과 및 공원정책과를 둔다.	④ ----------공원정책과, 공원운영과 및 기획지원과----------.
⑤ 기획총괄과장, 및 공원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.	⑤ 공원정책과장, 공원운영과장 및 기획지원과장----------.
⑥ ~ ⑦ (생략)	⑥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조(사무분장) ① (생략)	제4조(사무분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	② 공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~ 10. (삭제)	1. ~ 10. <신설>
	1. 용산공원 조성관련 업무의 총괄
	2. 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·조성·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	3. 부분반환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	4. 용산공원 법령·제도에 관한

	사항 5. 국회 및 예결산 등 업무에 관한 사항 6.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검토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7.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등에 관한 사항 8. 추진단 인사·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. 산재부지(유엔사, 캠프킴, 수송부)에 관한 사항 10. 기타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③ 공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1. (삭제)	③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7. <신설> 1. 임시개방부지 운영 및 행사 관리에 관한 사항 2. 용산기지 반환 관련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. 임시개방부지 관리(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관리)에 관한 사항 업무 4. 용산기지 반환 관련 펜스 공사에 관한 사항 5. 위해성 저감조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. 오염정화 관련 기초 조사 등 정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	7. 임시개방 관련 타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
④ < 신설 >	④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~ 7. <신설>	1.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. 전문가・시민・사회단체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3. 용산공원 추진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4.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에 관한 사항 5. 추진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. 미국 대사관 숙소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 7. 舊방위사업청, 군인아파트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